#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3 발의연월일: 2024. 6. 19.

발 의 자:백혜련·민병덕·백승아

정성호 · 복기왕 · 정준호

이재관 • 이워택 • 박상혁

서미화 · 김영배 · 서삼석

한준호・김 윤・홍기원

김영진 • 임미애 • 김영환

전용기 나인순 의원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임.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밀집, 경제활동인구·학령인구·군병력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 축소, 학교 기능 저하, 안보 위협 등을 야기하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문제 해결과 관련된 업무들이 다수의 부처에 산재해 있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실행이 어려운 상황임. 일례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아동돌봄서비스가 대동소이해 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뿐만 아니라 현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자문위원회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 결정 및 예산 편성 등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고, 파견직이 대다수인 현 사무처의 인력 구성 및 업무 체계로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한편 KDI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3년 저출생 대응 예산 47조원 중절반 이상이 저출생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현재 저출생 대응 대책은 보건복지부가 세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각기 다른 부처의 사업을 저출생 대응 대책으로 선정하여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되는 구조임. 그런데 이런 백화점식 정책 운영으로 인해 저출생과무관한 사업이 관련 정책으로 선정되며 저출생 예산의 착시효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음.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도 인구위기 주무부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저출생 정책 계획 수립과 집행력 담보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부처인「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 및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2조제 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6항, 제26조제1항제3호부터 제19호, 제29조부 터 제45조). 법률 제 호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2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인구위기대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은 인구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인구위기대응부

제29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제30조부터 제46조까지로 하고,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인구위기대응부)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은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인구위기대응전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는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이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인구위기대응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라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은 인구위기대응부령으로 본다.
-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 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률에 따라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신청· 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인구위기대응부장관 의 행위 또는 인구위기대응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4조(인사청문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은 국무위원 후 보자(인구위기대응부장관)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인구위기대응부, 인구위기대응부장 관, 인구위기대응부 소속 공무원 또는 인구위기대응부령을 각각 인 용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국무회의) ① (생 략)	제12조(국무회의) ① (현행과 같
	<u>♥</u> )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	②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	
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	
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	<u>교육부장관이 겸</u>
<u>임하는 부총리</u> 및 제26조제1항	임하는 부총리, 인구위기대응부
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	제19조(부총리) ①
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부총리 <u>2명</u> 을 둔다.	<u>3명</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부총리는 <u>기획재정부장관과</u>	③ <u>기획재정부장관,</u>
<u>교육부장관</u> 이 각각 겸임한다.	교육부장관 및 인구위기대응부
	<u> 장관</u>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⑥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은 인구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 제26조(행정각부) ① 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 다.

1. • 2. (생략) <신 설> 3. ~ 19. (생략)

② · ③ (생 략) <신 설>

제29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 략)

제30조(외교부) (생 략)

<u>제31조</u>(통일부) (생 략)

제32조(법무부) (생략)

제33조(국방부) (생략)

제34조(행정안전부) (생략)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 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 조정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인구위기대응부

4. ~ 20. (현행 제3호부터 제1 9호까지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인구위기대응부) 인구위기 대응부장관은 인구정책의 수립 ·총괄·조정, 인구위기대응전 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0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 행 제29조와 같음)

제31조(외교부) (현행 제30조와 같음)

제32조(통일부) (현행 제31조와 같음)

제33조(법무부) (현행 제32조와 같음)

제34조(국방부) (현행 제33조와 같음)

제35조(행정안전부) (현행 제34조 와 같음)

제35조(국가보훈부) (생 략)	<u>제36조</u> (국가보훈부) (현행 제35조
제36조(문화체육관광부) (생 략)	와 같음) 제37조(문화체육관광부) (현행 제
	36조와 같음)
제37조(농림축산식품부)(생략)	제38조(농림축산식품부) (현행 제
케90고(사어트사기이법)(제 라)	37조와 같음) 제20조(사업투사기의법) (청체 제
<u>제38조</u> (산업통상자원부) (생 략)	<u>제39조</u>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제 38조와 같음)
<u>제39조</u> (보건복지부) (생 략)	<u>제40조</u> (보건복지부) (현행 제39조
	와 같음)
<u>제40조</u> (환경부) (생 략)	<u>제41조</u> (환경부) (현행 제40조와 같음)
<u>제41조</u> (고용노동부) (생 략)	<u>제42조</u> (고용노동부) (현행 제41조
	와 같음)
<u>제42조</u> (여성가족부) (생 략)	<u>제43조</u> (여성가족부) (현행 제42조 와 같음)
<u>제43조</u> (국토교통부) (생 략)	<u>제44조</u> (국토교통부) (현행 제43조
	와 같음)
<u>제44조(해양수산부)(생</u> 략)	<u>제45조</u> (해양수산부) (현행 제44조
제45조(중소벤처기업부) (생략)	와 같음) 제46조(중소벤처기업부) (현행 제
	45조와 같음)